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박정환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 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N번방을 비롯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유포, 촬영, 합성 등으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7,463건에서 2022년 17,702건으로 늘었고, 이는 전체 성범죄의 42.72%를 차지하는 등¹⁾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범죄	32,104	32,029	30,105	32,898	41,433
디지털성범죄 비중	23.25%	22.94%	24.02%	35.21%	42.72%
디지털성범죄	7,463	7,347	7,232	11,583	17,7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6,085	5,893	5,005	5,686	6,082
통신매체이용음란	1,378	1,454	2,070	5,079	10,605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	-	32	260	171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	125	558	844

출처 : 검찰청, 해당년도 「범죄분석」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가 광범위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달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별도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²⁾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9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은 ▲2021년 413건 ▲2022년 906건 ▲2023년 649건 ▲2024년 431건이다.(대구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인용)

2)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성착취물 삭제·법률상담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는 대구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사)대구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건수 146명, 상담건수 2,206건에 달한다.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